

『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1일

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박 세 범

나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에 따른 기금 일몰제도를
조례에 반영하여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고,
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가. 당초 :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

나. 변경 :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○ 기금 일몰제도를 반영한 조항 신설(안 제2조)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: 2021년 12월 31일까지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금 일몰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, 제명 변경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지원기준이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